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

발의연월일 : 2024. 7. 12.

발 의 자:문금주・박 정・문정복

이기헌 • 권칠승 • 김영배

황정아 • 정을호 • 이훈기

복기왕 · 서삼석 · 김 윤

송옥주 • 이광희 • 문대림

유준병·임호선·김기표

이워택 • 민형배 의위

(20인)

제안이유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환경재해에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인의 불안정한 삶은 농수축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고, 이러한 농수축산업의 후퇴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에 국가 차 원의 재정적 대응과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농수축산업 재해를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

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여 농수축산업 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튼튼 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 나.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
- 라. 기금은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 록 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 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3.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6.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터 받은 전입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5조(장기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어업재해대 책법」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2. 기금운용계획
- 3. 결산보고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1호에 따른 재해 및 환경오염에 의한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농 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 3. 재해 관련 분야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 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 제10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

른다.

-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 · 공채의 매입
 -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제12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있다.
- 제13조(감독 및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